

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7. 31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- 1. 건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근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NOOO OOOO TOOO TOOO	1998.10.29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	취업활동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 및 연락두절로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음 -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: '26.8.14.	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 기간: 2026.7.31. ~ 2026.8.14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주은(Tel. 031-8024-982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